인천항 수입사료 반출의무기간 연장

1. 경 위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자유무역지역의 운영 및 물품 관리에 관한 통합고시」(관세청고시 제2004-28호)에 따라 인천세관에서는 부두내의 화물 적체해소와 물류흐름을 신속히 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04.6.23부터 인천항을 통해 수입되는 모든 화물에 대하여 개별화물의 특성 등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5일 이내 전량반출 의무규정(미반출시 과태료 부과)과 장치기간 3개월을 준수(3개월 경과물품은 공매처분)하여 줄 것을 통보하여 옴.

2. 문제점

가. 전용부두등항구내관련시설의부족

배합사료원료는 화물의 특성상 다수의 사료업체가 공동으로 원료를 구매해 대형선박(BULK선)을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수입하고 있음에도 사료원료 하역만을 위한 전용부두(곡물제외)가 없어 부득이 일반부두에서 하역을 한 후 부두내의 사료원료 전용창고에 보관하고 있으나 동창고시설이 부족하여 일부물량의 부두내 야적이 불가피한 실정임.

나. 15일이내 반출의무규정 준수는 물리적으로불가능

□ 수송차량부족

다수의 배합사료 제조업체가 원료의 필요시기에맞춰 공동구매를 함에따라다수업체가 비슷한 시기에 수입신고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신고후 15일 이내에 전량을 반출하기에는 곡물을 수송할 수있는특수차량 대수등을감안할때 현실적으로불가능

□ 상 · 하차등반출능력 한계

각 항만의 장치장에는 사료원료 뿐만 아니라 식용 및 가공용 양곡 등 기타화물이 함께 장치되어 있어 개별장치장 및 하역업체의 1일 출고 가능량에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더욱이 주5일 근무제 실시에 따른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등 휴무일에는 출고를 기피하고 있어 수입신고 수리후 15일 이내(실제 출고가능일 10일 내외)의 기간 내 반출은 매우 어려운 실정임.

□ 안전사고 발생우려

수입화물의 15일 이내 반출을 강요하는 경우 항만내에 운송차량 집중으로 인한 혼잡이 가중되어 각종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될 것이 우려됨.

□물류비상승에따른축산농가부담가중

세계적인 해상운임의 폭동과 생산량 감소에 따른 국제곡물가격의 급등 등 축산업 및 배합사료 산업의 경영환경이 날로 위축되고 있는 현실에서 수입원료에 대한 15일 이내 조기반출 시행으로 인한 추가 경영비용은 결국 양축농가의 부담으로 이어 질 수밖에 없음.

□소량구매에 따른 수입단가 상승 및 체선 가중

제반 여건상 15일이내 반출의무 기간의 준수를 위해서는 사료업계는 원료구매를 소량단위로할 수 밖에 없는데, 소형선박 용선에 따른 원료수입 단가 상승은 물론이거니와 입항 선박수가 증가해 오히려 체선 및 체화현상이 더욱 심화될 우려가 있음

3. 조치 및 결과

이에 따라 우리 협회에서는 인천세관을 방문하여 위와 같은 배합사료 업계의 입장을 설명하고 수입신고 수리후 15일이내 반출의 곤란할 경우 추가 60일까지 반출의무기간을 연장하여 줄 것을 건의한 결과 인천세관에서는 배합사료 업계 및 축산업계의 현실을 감안해 협회의 건의를 수용하였으며, 아울러 항만내 물류흐름이 신속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배합사료업계도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함.